

제810호

# 무주 공보

2026. 6. 4.(목)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 조 례

-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부분 2차) 변경 승인 고시…… 7

● 무주군 공고 제2026-609호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복잡한 문구와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번호를 현행화 함  
(안 제1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첨부서류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을 명확화·간소화 함(안

제3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위생관리팀)
- 전자우편 : rladkfkka79@korea.kr
- 팩스 : 063-320-248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063-320-23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서

- 조례명 :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성명(기관·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 조례 제 호

###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사업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 사용허가, 점용허가 등 적법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부분 2차) 변경 승인 고시

우리 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의 시행계획(부분 2차) 변경 승인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1. 사업의 명칭 :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2. 사업의 목적 : 안성면 중심지의 생활 SOC시설 확충과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을 조성·육성하고,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 문화·교육·교류 활동 지원 - 대지면적 : 7,150㎡ - 건축면적 : 1,369.9㎡ - 연면적 : 2,064.3㎡ - 지상 2층/주민공동이용시설	• 금회 부분 2차 승인 (세부내역 변경)
	• 어울림센터 서비스 기능개선	• 어울림센터 서비스 기능개선 • 문화·여가 기능 강화 - 세미나실, 다목적 광장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	
지역경관 개선	• 안성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 안성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 보행로 신설·정비 207m	

지역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건강돌봄 프로그램</li> <li>• 청장년 문화교육 프로그램</li> <li>• 청소년 창의학습 프로그램</li> <li>• 영유아 놀이문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연령별 생활서비스</li> <li>• 배후마을 미디어 활성화</li> <li>• 주민주도 배후마을 지역문제 해결</li> <li>• 지속가능한 배후마을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인재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인재 육성</li> <li>• 공동체 자립 활성화</li> <li>• 사업 운영체계 구축</li> </ul>

나. 사업의 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거리 외 7개리

4. 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10,500백만원, 지방비 4,5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22년 ~ 2028년(7개년)

#### 6. 사업의 효과

가. 중심지 내에 부족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기능 시설 강화  
및 통합거점 마련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나. 주민들의 수요에 기반한 부족한 생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심지의  
기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7. 사업시행자 : 무주군수(위탁수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063-320-260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

[붙임]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사업비 증·감

(단위: 천원)

구분	세부 사업명	시행계획 (부분 1차)		시행계획 (부분 2차)		증(△)감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000,000		15,000,000	-	-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10,720,465		10,720,465	-	-	
	안성 생활활력센터 조성	1식	10,270,465	1식	10,270,465	-	-	세부내역 변경
	어울림센터 서비스 기능개선	1식	450,000	1식	450,000	-	-	시행계획 수립중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450,000		450,000	-	-	
	안성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1식	450,000	1식	450,000	-	-	시행계획 수립중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소 계		1,660,000		1,660,000	-	-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4식	225,050	4식	225,050	-	-	변경없음
	배후마을생활 서비스 확대	4식	1,213,479	4식	1,213,479	-	-	
	주민인재 육성	3식	221,471	3식	221,471	-	-	
부대 비용	소 계		2,169,535		2,169,535	-	-	
	기본계획비	1식	225,054	1식	225,054	-	-	변경없음
	세부설계비	1식	468,885	1식	468,885	-	-	
	공사감리비	1식	1,081,163	1식	1,081,163	-	-	
	시설부대비	1식	47,395	1식	47,395	-	-	
	경영지원비	1식	73,556	1식	73,556	-	-	
	기타부대비	1식	273,482	1식	273,482	-	-	